

旅費規程

2004年 12月 20日 第2回 定期總會 制定

- 第 1 條 (目的) 이 規程은 任員 및 職員이 學會用務로 出場할 때 旅費支給의 基準을 正함을 目的으로 한다.
- 第 2 條 (旅費의 種類) 旅費는 旅行의 目的에 따라 國內旅費, 國際旅費로 區分하고, 지급의 내용에 따라 出場費, 交通費(鐵道賃, 船賃, 航空賃, 自動車賃), 現地交通費, 宿泊費, 食費로 區分한다.
- 第 3 條 (旅費計算) 旅費는 順路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단, 用務形便狀 또는 天災地變,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順路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 實地經過한 露呈에 의한다.
- 第 4 條 (出場日數計算) 出場日數는 用務로 소요되는 日數에 의한다. 다만, 出張중 疾病,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滞在하는 日數는 의사의 診斷書와 事由書를 添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出張일수에 계산할 수 있다.
- 第 5 條 (概算額支給) 旅費는 概算額을 지급할 수 있다. 全 항의 概算額은 歸任後 즉시 精算하여야 한다.
- 第 6 條 (準用) 囑託, 雇用職員 및 臨時職員의 여비에 관하여는 본 規程을 準用한다.
- 第 7 條 (國外旅費) 國外에 任職員이 出場할 때의 여비는 別表 2, 別表 3의 定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- 第 8 條 (支給基準) 철도임, 선임, 항공임 및 자동차임은 別표 1, 2에 의하여 定액을 지급한다.
- 第 9 條 (實費支給) 特別한 사정으로 인하여 定額의 車馬費로서 實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實費額을 車馬費로 支給할 수 있다.
- 第 10 條 (交通費計算) 交通費는 여행중의 그 全 露呈을 定額별로 通算하여 이를 계산한다. 단, 通常 1km미만의 單數는 節算한다.
- 第 11 條 (現地交通費, 宿泊料, 食費支給) 現地交通費, 宿泊料, 食費는 每年 豫算의 範圍내에서 會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- 第 12 條 (現地交通費, 宿泊料 計算) 現地交通費는 日數에 따라, 宿泊料는 宿泊하는 日數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. 다만, 水路旅行, 航空旅行중의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附 則

1. 本 規程은 2004年 12月 20日부터 施行한다.

(別表 1)

國內旅費 (交通費)

구 분 직 위	교 통 비			
	철 도 임	선 임	항 공 임	자 동 차 임
임 원	1 등급	1 등	정 액	정 액
직 원	2 등급	2 등	정 액	정 액

- 비 고 : 1. 교통비는 교통부장관의 인·허 요금으로 지급한다.
 2. 철도임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.
 3. 직원이 임원을 수행할 경우, 교통비는 임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(別表 2)

國 外 出 場 航 空 賃

단 위	지 역	항공임
회장단	아시아주, 대양주, 북미주, 남미주, 유럽주, 중동 및 아프리카주	정 액
임 원	아시아주, 대양주, 북미주, 남미주, 유럽주, 중동 및 아프리카주	정 액
직 원	아시아주, 대양주, 북미주, 남미주, 유럽주, 중동 및 아프리카주	정 액

(別表 3)

國外出場航空賃, 日當, 宿泊料, 食費定額表

(단위 : 미불화)

단 위	지 역	항공임	일당(1인)	숙박료(1인)	식 비(1인)	계 (항공임제외)
회장단	아시아주, 대양주, 북미주, 남미주	정 액	40	130	50	220
	유럽주			120	55	215
	중동, 아프리카주			130	60	230
				105	55	200
임 원	아시아주, 대양주, 북미주, 남미주	정 액	30	115	45	190
	유럽주			105	50	185
	중동, 아프리카주			115	55	200
				90	50	170
직 원	아시아주, 대양주, 북미주, 남미주	정 액	20	85	40	145
	유럽주			75	45	140
	중동, 아프리카주			85	50	155
				60	45	125

- 비 고 : 1. 정부에서 특별히 규제된 부분은 그 기준을 준용한다.
 2. 비상임임원이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업무수행차 출장할 때에는 상임 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3. 직원이 회장단 및 임원을 수행할 때에는 본표에서 할증할 수 있다.